

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금융정보조회 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7. 8. 21.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 1 조(목적) ~ 제 2 조(용어의 정의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3조 (금융정보조회 신청)</p> <p>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플랫폼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며, 관련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.</p> <p>② 사용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면(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)에 의하여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오픈플랫폼중계센터는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사용자가 신청한 실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(이하 “핀테크이용번호”라 한다)로 핀테크 기업에 제공합니다.</p> <p>④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4조(자동이체) ~ 제15조 (다른 약관과의 관계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 <p>제1조(목적) ~ 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 <p>제3조 (금융정보조회 신청)</p> <p>① (좌동)</p> <p>② 사용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면(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), ARS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정보조회 동의 방법에 의하여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(좌동)</p> <p>④ (좌동)</p> <p>제4조(금융정보의 종류) ~ 제12조 (다른 약관과의 관계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	<p>ARS 등 사전동의 방법 추가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미적용

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이전에 영업점, 인터넷뱅킹 이용매체에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개월간 게시하고,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